

공공기관 공통필수 법정교육1

1. 성희롱 예방관리

*직장 내 성희롱

- 사업주 상급자,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
-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
*직장 내 성희롱 유형

- 육체적 성희롱
- 언어적 성희롱
- 시각적 성희롱

*직장 내 성희롱 발생원인

- 직장 내 다양한 권력관계
- 전통적 성 역할의 고정화
- 관계와 소통의 부재

*관리자가 성희롱 사건 인지단계에서 취해야 할 행동

- 조직 내 성희롱 업무담당 부서에 보고
- 상담 및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
-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방안 모색

*직장 내 성희롱 대처요령- 명확한 의사표현

-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, 증거수집
- 상급자(고충상담원)에게 상담 요청
- 사업주에게 문제제기
- 외부기관에 도움 요청

*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
- 성희롱 접수-> 상담과 조사-> 사실확인 및 조치-> 인사조치 및 징계

*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- 국가인권위원회

- 노동위원회
- 고용노동부
- 민사손해배상
- 형사고소

2. 성폭력 예방관리

*성폭력

-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.
- 법률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 즉,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다.
-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뜻한다.
-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,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.

*직장내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- 음담패설,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언어적 행위

-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
-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- 공적인 장소인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

*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상 기관업무처리 담당자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-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.

-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준다.
-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.
-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.

*성폭력 예방 노력- 평등한 가치기준을 가진 조직문화 형성

- 2차 피해 예방 노력과 피해자 지지하기
- 직급, 성별 불문한 존칭, 존중 언어 사용
- 차별, 고정관념, 편견 깨기

*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제도

-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
-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충
-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
-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

3. 성매매 예방관리

*성매매의 정의

-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의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
-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,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,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,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

*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

-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
-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처벌
-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
-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

*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

-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편견, 통념, 의식을 바꿔야 한다.
-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성매매가 문제인지 고민하고 서로 토론해봐야 한다.
- 성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.
- 성매매는 나, 우리 가족, 이웃 등 모두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성매매 허용하는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길러야 한다.

*성매매 방지법 의의

- ‘윤락 행위’의 개념을 폐기하고 ‘성매매’개념 도입
-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
-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구조, 자립/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 마련

4. 가정폭력예방교육

*가정폭력의 정의

-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- 가정구성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

*가정폭력의 예시

- 지나친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욕설
- 며느리가 이주여성이라고 무시하는 행위
- 강제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강제적 성관계

*가정폭력 현황

- 자녀폭력이 대표적이다.
- 노인학대 등이 포함된다.
- 부부폭력 중 여성 피해율이 남성 피해율보다 높다.

*가정폭력의 특성

- 은폐성
- 지속성
- 중첩성
- 반복성

*가정폭력의 형태

- 신체적 폭력 : 신체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 등
- 정서적 폭력 : 무시, 위협, 헐박, 물건던지기, 통제, 억압, 욕설, 의심
- 금전적 폭력 : 생활비를 안 주거나 소비에 대한 지나친 간섭, 돈 내놓기를 강요함 등
- 성적 학대 :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, 만지는 행동, 촬영하는 등의 행동

*피해자 보호명령제도

- 경찰 : 응급조치-폭력행위의 제지, 가해자와 분리 면담
- 검찰 : 임시조치-폭력 재발 우려 시, 경찰(신청)->검사(청구)->법원(결정)
- 피해자 :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-피해자가 직접 관할 법원에 신청, 가해자를 주거로부터 격리/접근금지 등 보호명령 청구

5.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

*개인정보 보호 원칙
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개인정보의 수집단계

-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/이용 목적,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의 사항을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*개인정보보호 수칙

- 적절한 방법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,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관행이 아닌 법률근거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.
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, 개인정보 처리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하나로 볼 수 있다.
- 웹 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 취급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 등은 정당한 요구이다.
- 개인정보 취급현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, 보유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.

*개인정보의 처리 제한

-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/신념, 노동조합/정당의 가입/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-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,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개인정보자기결정권

-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,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*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

- 민간정보수집금지의 원칙
- 최소수집의 원칙

6. 청탁금지법의 이해(1)

*속지주의

- 대한민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는 주의

*청탁금지법

-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(청탁금지법 제5장 징계및 벌칙 참조)
-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14가지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와 지위·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(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참조)
-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참조). 그리고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의 대상입니다.
- 부정청탁의 예외중 하나로서 단순한 선처 또는 편의를 부탁하는 경우: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

7. 청탁금지법의 이해(2)

*사교목적의 선물

- 사교목적 선물의 경우는 5만원이 상한입니다(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, 별표 참조)

*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

- 위 경우 직무관련성은 요하지 않으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(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 제1항 참조)

*직무관련성의 유무

-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금지로 인한 범죄의 성립요건과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의 수수금지로 인한 위반행위 성립요건

*청탁금지법상 신고자등의 보상금 지급신청 시한

- 수입의 회복 등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

*5급이하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

- 상한은 20만원.(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별표 참조)

*양벌규정(청탁금지법 제24조)

-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, 임직원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법인또는 단체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

1. 인권의 이해

- 인권의 정의
 -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,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삶의 필수조건
 -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권리
 -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
- 인권의 속성
 - 보편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음
 - 서로 의존하여 나눌 수 없음
 - 평등하며 비차별적임

2.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

- 주거권
 -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사람의 의, 식, 주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권을 우선으로 함
- 노동권
 - 노동 :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
 - 우리나라 노동권의 가장 큰 문제점 : 최저임금제, 비정규직 문제
- 복지권
 -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
 - 다른 권리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 제공
 -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제도 : 공공부조, 사회보험, 사회서비스·수당
- 자유권
 -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, 신체의 자유, 사상·양심·표현의 자유, 집회·결사의 자유, 사생활의 보호·프라이버시, 정치활동의 권리, 법 앞의 평등 등
 - 사생활의 보호, 프라이버시 :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
- 평등권
 - 소수자를 판단하는 기준 = 차별을 받고 있는가? 아닌가?
 - 남녀간의 차별, 지위계층간의 차별, 학력차별, 성인과 청소년의 나이에 대한 차별,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, 인종과 다문화에 의한 차별 등

3.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우리의 과제

-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우리의 과제
 -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,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함
 - 문제 발생 → 원인 파악 → 해결방법 제시 → 전파
-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
 - 기업 내 직원들 스스로 예방 캠페인 등 문화 만들기
 - 역지사지(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습관화)
 - 기업의 구성원으로써 주인의식 갖기